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52

발의연월일: 2025. 3. 5.

발 의 자: 박성훈·김성원·이헌승

이인선 • 고동진 • 최은석

조배숙 · 한지아 · 조은희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록·보존 의무와 같은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으로도 의무이행 효과 달성이 가능함에도불구하고 현행 형벌규정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어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수족관의 개체 수 등 기록·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 로써 과도한 형벌규정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2호 삭제 및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법률 제 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0조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벌칙) ①・② (생 략)	제3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에 따른 기록・보존	<u><삭 제></u>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32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10.</u> 제20조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